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심사경과

1. 심사일정

가. 제안자 :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96. 6. 15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4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(96. 6. 21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

나. 내용

-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상 용어 개정
-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으로 정하고자 함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p>○ 제3조에 사업장 폐기물 소각금지 내용 규정 삽입 가능여부</p> <p>○ 폐기물소각장을 위탁 운영할 것인지?</p>	<p>○ 사업장 폐기물은 현재 소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철저히 감시하고 있음</p> <p>○ 현 폐기물소각장 운영체계가 한시적인 직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도 민간위탁함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음</p>

4. 토론요지 :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개정사항이고 폐기물소각장을 위탁운영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

5. 수정안 내용 : 해당사항 없음

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20호
의 결	96. 6. 28
년 월 일	(제46회)

제출년월일 : 1996. 6. 15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- 폐기물관리법(95. 8. 4 법률 제4907호)·폐기물관리법시행령(96. 1. 19 대통령령 제14897호)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(96. 2. 5 환경부령 제18호)으로 폐기물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변경 및 폐기물소각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

주요골자

- 용어의 정의 변경
 - 가연성 일반폐기물 →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
 - 특정폐기물 → 지정폐기물
- 폐기물소각시설 관리·운영 위탁대상
 -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
 -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등 5개의 단체 또는 개인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·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일반폐기물 중 가연성 일반폐기물”을 “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(이하 “가연성폐기물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내지 제4항중 “일반폐기물”을 각각 “폐기물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소각대상 폐기물 및 소각용량)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에 한하며, 처리용량은 1일 2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

제4조중 “일반폐기물”을 “폐기물”로 한다.

제5조중 “특정폐기물”을 “지정폐기물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시장은 법 제30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“별표 8”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제7조제1항중 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”을 “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”으로 하고, 동항단서 중 “일반폐기물”을 “폐기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
2.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

제9조제1항·제2항 및 제10조제1항·제2항 중 “일반폐기물”을 “폐기물”로 한다.

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,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또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
2.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
3.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·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
4.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
5.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

②소각시설의 위(수)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황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(이하 “사업소”라 한다)로 반입되는 <u>일반폐기물 중 가연성 일반폐기물</u>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① “소각시설”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상 <u>일반폐기물 중 가연성 일반폐기물</u>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</p> <p>② “가연성 <u>일반폐기물</u>”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<u>일반폐기물</u>을 말한다.</p> <p>③ “소각시설사용자”라 함은 가연성 <u>일반폐기물</u>을 소각하고자 소각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④ “폐기물운반차량”이라 함은 가연성 <u>일반폐기물</u>을 소각시키고자 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.</p> <p>⑤~⑥(생략)</p> <p>제3조(소각대상 폐기물 종류 및 소각용량)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는 <u>일반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</u>로 하며 시설용량인 1일 200톤을 초과하여 소각할 수 없다.</p>	<p>제1조(목적) <u>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</u>(이하 “가연성폐기물”이라 한다)</p> <p>제2조(정의) ① <u>폐기물</u>.....<u>폐기물</u></p> <p>②.....<u>폐기물</u><u>폐기물</u>..... </p> <p>③<u>폐기물</u></p> <p>④<u>폐기물</u></p> <p>⑤~⑥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소각대상 폐기물 및 소각용량)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<u>폐기물</u>은 가연성폐기물에 한하며, 처리용량은 1일 200톤을 초과하지 <u>아니한다</u>.</p>

현 황	개 정 안
<p>제4조(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 등) ①(생략)</p> <p>1. 부천시 관내 무단투기 폐기물 중 가연성 <u>일반폐기물</u>을 구청장이 직접 수거하고자 할 경우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시장은 중동신도시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<u>일반폐기물</u>을 사업소에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 시가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1. 가연성 <u>일반폐기물</u>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</p> <p>2. ~3(생략)</p>	<p>제4조(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 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<u>폐기물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u>폐기물</u></p> <p>1.<u>폐기물</u></p> <p>2. ~3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폐기물의 분리) 시장은 <u>특정폐기물</u>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여 <u>특정폐기물</u> 소각으로 인한 공해발생 예방과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폐기물의 분리)<u>지정폐기물</u></p> <p>.....<u>지정폐기물</u></p>
<p>제6조(소각시설 운영 등) ①(생략)</p> <p>②시장은 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“별표 9”의 규정에 의한 <u>일반폐기물</u>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③~⑥(생략)</p>	<p>제6조(소각시설 운영 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시장은 법 제30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“별표 8”의 규정에 의한 <u>폐기물처리시설</u>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③~⑥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반입허가 및 손실보상) ①구청장 및 <u>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(수집·운반업)</u>허가를 받은 자 중 소각시설을 사용</p>	<p>제7조(반입허가 및 손실보상) ①..... <u>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</u></p>

현 황

개 정 안

제10조(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 등) ①소각시설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 받는 자가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차량 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미신청 시 시장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.

②(생략)

1. ~2(생략)

3. 일반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였을 경우

4. (생략)

신설

제13조(시행규칙) (생략)

제10조(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 등) ①

.....폐기물.....

②(현행과 같음)

1. ~2.(현행과 같음)

3. 폐기물.....
.....

4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또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

2.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

3.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·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

4.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

5.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

②소각시설의 위(수)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(현행 제13조와 같음)